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. 4. 11 선고 2018가단10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4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2,512,400원 및 2017. 12. 17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35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.

판사강수정

별지